

●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5호

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06월 13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

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저작자·저작인접권자·데이터베이스제작자·상속인·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 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” 를 “공동저작자·공동저작인접권자·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·공동상속인·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경우에 한정한다” 를 각각 “경우만 해당한다” 로 한다.

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법 제55조제7항(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	1,000원	면제
--	--------	----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수료(1건) 방문·우편: 1,000원 인 터 넷: 면 제
--

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등록사항의 변경·경정·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(이하 "변경등록등"이라 합니다)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-----	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등록 등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·경정·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저작권 등록사항 변경·경정 등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저작권 등록증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,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저작권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